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 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1항 5호, 6호 신설)
- 나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(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)
- 다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,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관하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)
- 라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

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5항 신설)

마.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

해당사항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,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)

바. 인명·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

있어서 공연이 중단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

(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예정)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

6.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③ 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’를 ‘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’로 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④ 제3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,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관하여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⑤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·확인하기 위하여 공연예정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등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과 3호 가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다만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6 제1항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연중에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	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 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
<신 설>	6.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 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 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<u>법 제</u> <u>11조제3항</u> 에 따라 해당 시설이 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 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 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 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법 제</u> <u>11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의4(안전교육)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안전총괄책임자

가.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
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

④ 제③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, 관할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관하여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.

⑤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·확인하기 위하여 공연 예정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등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(안전교육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-----

<신 설>

나. (생 략)

3. 안전관리담당자

가.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
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

<신 설>

나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9조의6(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)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 략)

다만,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-----

다만,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6(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연중에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744